

'9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(안)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8.

제출자 : 속초시

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를 구함

2. 제안사유

- 추가로 내시된 교부세및 국도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'94년도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와
- 예산절감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화합을 이룩하고자함.

3. 참고사항

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및 사항별 설명서 : 별 첨

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	자치단체 제출예산액	제 2 회 추경예산	승 인 액	비 고
계		99,914,290	18,575,802	18,575,802	
일 반 회 계		44,125,469	3,427,541	3,427,541	원안의결
특 별 회 계		55,788,821	15,148,261	15,148,261	"
공 기 업	계	34,595,000	12,382,000	12,382,000	
	상수도사업 특별회계	12,676,000	1,944,000	1,944,000	"
	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	21,919,000	10,438,000	10,438,000	"
기 타 특 별 회 계	계	21,193,821	2,766,000	2,766,000	
	주 택 사 업 특별회계	4,912,437	2,224,945	2,224,945	"
	의 료 보 호 특별회계	990,414	310,000	310,000	"
	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	225,556	9,316	9,316	"
	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	12,838,112	222,000	222,000	"

예 산 총 칙

제 1 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합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세출 예산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	비 고
합	99,914,290	2,991,600	
일 반 회 계	44,125,469	1,323,000	
특 별 회 계	55,788,821	1,668,600	
계	34,595,000	1,037,000	
국 민	12,676,000	380,000	
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21,919,000	657,000	
기 타 특 별 회 계	21,193,821	631,600	
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874,920	26,000	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4,912,437	147,000	
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990,414	29,000	
새마을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	147,005	4,000	
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	23,226	600	
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	149,287	4,000	
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	225,556	6,000	
공 유 립 관 리 특 별 회 계	1,032,864	30,000	
지 방 양 어 금 특 별 회 계	12,838,112	385,000	

-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19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조서"와 같다.
-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9,708천원으로 한다.

(단 위 : 주 원)

수 입		2회 추경	당초 예상	증 감	비고
계		12,676,000	10,732,000	1,944,000	
영 업 수 입	스 계	2,448,967	2,448,967		
	금 수 수 입	2,066,314	2,066,314		
	수탁공사 수익	300,000	300,000		
	금수장치 손료	73,653	73,653		
	수 수 료 수 입	9,000	9,000		
	스 계	667,033	667,033		
영 업 수 입	수 입 이 자	637,000	637,000		
	하 특 부 담 금	10,000	10,000		
	재산임대 수입	7,788	7,788		
	불 용 품 매 각	1,000	1,000		
	변상금·의약금	1,000	1,000		
	감 수 입	10,245	10,245		
영 업 수 입	스 계	160,000	536,000		
	하 특 부 담 금	60,000	60,000		
	탁회계 보조금	100,000	476,000		
자 비 요 구 산	스 계	9,400,000	7,080,000	2,320,000	
	이 월 금	9,278,223	7,000,000	2,278,223	
	미 수 금	121,777	80,000	41,777	

'93 2회추경 세출 예산안

(단 위 : 千원)

지출		2회 추경	당초 예산	증 감	비고
계		12,676,000	10,732,000	1,944,000	
영, 임 비용	소 계	2,036,963	2,108,879	△71,916	
	· 인 건 비	712,033	730,304	△18,271	
	· 기본경상비	476,357	533,137	△56,780	
	· 관서운영비	298,160	300,025	△ 1,865	
	· 경상사업비	149,413	144,413	5,000	
	· 투자사업비	300,000	300,000	-	
	· 기타 경비	101,000	101,000	-	
영, 임 외 비용	소 계	708,592	708,592	-	
	· 재정자금이자	18,854	18,854	-	
	· 공채 · 지역개발	688,600	688,600	-	
	· 차 관 이 자	1,138	1,138	-	
가, 등 설 비 자 산	소 계	9,176,745	7,252,104	1,924,641	
	· 토 지	420,744	420,744	-	
	· 건 물	41,860	41,860	-	
	· 구 축 물	8,470,981	6,550,500	1,920,381	
	· 기 계 장 치	158,260	176,500	△ 18,240	
	· 차량운반구	7,000	7,000	-	
	· 공기구비품	78,000	55,000	22,500	
원 금 상 환	소 계	341,330	341,330	-	
	· 제 정 자 금	62,646	62,646	-	
	· 공 채	276,375	276,375	-	
	· 외 국 차 관	2,309	2,309	-	
예 비 비	소 계	412,370	321,095	91,275	
	· 예 비 비	412,370	321,095	91,275	

1. 예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1993년도 속초시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제 2 조 (임무예정량) 임무의 예상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인간총생산량

○ 태 지 조 상

천㎡ (천명)

○ 공던 용지 조상

411 천㎡ (124 천명)

○ 유 원 지 조상

○ 주택 건립 실적

(가구)

나. 인간 공급 실적

○ 태 지 조 상

천㎡ (천명)

○ 공던 용지 조상

211 천㎡ (64 천명)

○ 유 원 지 조상

○ 주택 공급 실적

(가구)

제 3 조 (수익자 수익 및 지출) 수익자수입 및 지출의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입

제 1 권 공영개발 사업수익	2,402,000 원
제 1 항 영업 수익	1,700,000 원
제 2 항 영업외 수익	702,000 원
제 3 항 특별 이익	

지출

제 1 권 공영개발 사업비용	1,211,308 원
제 1 항 영업 비용	350,308 원
제 2 항 영업외 비용	560,000 원
제 3 항 특별 손실	300,000 원
제 4 항 예비비	1,000 원

제 4 조 (서분적 수입 및 지출) 서분적 수입 및 지출의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서분적수입이 서분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액금액 10,269,692천원으로, 만년토
 손익계정 유보지급1,190,692천원,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계분액9,079,000천원
 및 적립금 지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입

제 1 권 자본적 수입	10,438,000 원
제 1 항 고정자산 매각수입	•
제 2 항 투자 및 기타 자산수입	•
제 3 항 유동 부채 수입	•
제 4 항 고정 부채 수입	10,438,000 원
제 5 항 잉여금 수입	•
제 6 항 기타 자본적 수입	•

지출

제 1 권 자본적 지출	20,707,692 원
제 1 항 제고지선	18,703,912 •
제 2 항 임대주택 건설사업비	•
제 3 항 가동 설비지선	1,780 •
제 4 항 비가동 설비지선	•
제 5 항 이익지선	•
제 6 항 투자 및 기타지선	•
제 7 항 유동부채 상환	•
제 8 항 고정부채 상환	•
제 9 항 기타 자본적 지출	2,000,000 •
제 10 항 예비비	2,000 •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인원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1 세부내역은 별첨 "계속비조서" 외 같다)

원 인	인 원 명	총 액 천원	년 도 19 19 19 년도	년 월 액 천원 천원 천원
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6 조 (제부부담액) 제부부담액위를 원수있는 사항과 기간 및 원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 양	기 간	원 도 액 천원
	년도에서 년도까지	

제 7 조 (시명제) 기제의 복식, 인도액, 기제의 방법, 이사를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제 복 식	인 도 액 천원	기 제 방 법	이 사 율 연 8 %	상 환 방 법
삼조호 유원식 계발 식원	10,438,000	강원도 지역계발기금		3년치지2년균분상환

제 8 조 (임시차입금) 임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금지피복) 다음에 개기하는 피복이 정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지 없 또는 그 정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1. 금 여 천원

2. 빈 정 보 비 6,300 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이익잉여금의 처분) 이익이익잉여금 천원과 당년도 예산이익 잉여금 천원 총 천원 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|
| 1. 이익결손 보조금 | 천원 |
| 2. 이익 적립금 | 천원 |
| 3. 감 계 적립금 | " |
| 4. 건설개발 적립금 | " |
| 5. 남 부 금 | " |

제 12 조 (재무지식) 수입환노예) 재부지식 수입환노예은 1,780 천원으로 한다.
(" 재부내어은 " 재부지식 수입 및 사용주서 " 이 같다.)

제 13조 (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(그 세부내역은 "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주제"외 같다.)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1. 취득자산				
2. 처분자산				

제 14조 (회신기금) 회신기금의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.

1993. 8.

속 초 시 장 김 광 용